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 COVER STORY:
관세 및 무역에 대한 관세사의 역할1
- ▶ FTA NEWS:
한-터키 FTA 협정체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2
- ▶ SHINHAN EVENT:
2012 년상반기교육.....3
- ▶ VOICE FROM THE FIELDS
가공무역기업의법인기업전환에
관한 공고 소개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담배의협약기탁이행대금의상
환금이과세가격에포함되는지
여부5
- ▶ WHERE IS GRACE CHANG?:
1 만시간의법칙6
- ▶ ABOUT WRITERS7

관세 및 무역에 대한 관세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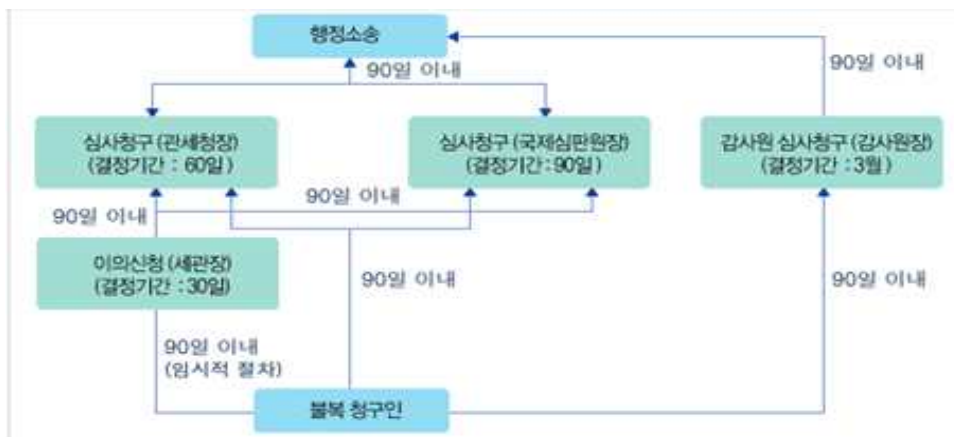
관세사란, 통관절차를 이행하거나 화주를 대리해 관세법상의 행정업무를 하는 전문직업인.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분류와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관세법에 관한 불복대리 및 관련 컨설팅 등이 주 업무다. 1975년 관세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시험을 쳐 75명의 관세사를 선발한다. 지난해 말 기준 1,029 개의 관세법인과 1,419 명의 개인 관세사가 활동하고 있다

□ 관세법에 의한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이하 수출 등)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수출 등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세율적용을 위한 세번분류 및 과세가격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종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가 필요할 것이다. 관세사는 고객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위해 복잡한 수출 등의 신고 절차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히 이를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받은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하 이의신청 등)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등의 제기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이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기 이내에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세사는 고객의 권리,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고객의 위임 하에 이의신청 등을 대리하고 고객의 권익을 대변한다.



※ 관세법에 의한 행정소송 절차

□ 기업심사 및 종합심사 대응을 위한 전략 구현

세관은 수출입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업심사를 수행한다. 기업심사에는 종합심사와 기획심사가 있으며,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및 지적재산권 등 통관적법성 확인 대응분야에서 고객의 권익실현을 위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에 의한 환급 청구의 대리

환특법에 따라서 환급대상 원재료, 환급대상 수출, 환급신청기간 내의 환급신청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관세사는 환급에 필요한 수출입 데이터 분석 및 소요량 계산 등 업무를 대리함으로써 고객이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을 받도록 돕는다

□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검증 관련 절차 이행

현재 우리나라는 8 개의 FTA 협정에서 45 개국과 자유무역이 가능하다. FTA 의 특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세사는 FTA 활용에 필요한,

품목별 원산지결정, 국내 원산지증명절차 이행 및 국내외 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업무를 이행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각종의 절차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또한 확산되고 있는 FTA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FTA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각종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 AEO 인증 획득

AEO 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하며,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 관리의 공인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한다. 관세청에서는 AEO 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 제외, 과태료 완화 및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 AEO 업체에 비해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사는 수출입 업체 및 물류업체 등 AEO 공인을 획득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인에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돕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임 보 화
(bhlim@customsservice.co.kr)

SHINHAN'S Event

2012 상반기 교육

신한관세법인은 금번 상반기 고객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존 고객사를 포함한 수출입 및 물류업체에게 무역거래시 놓치기 쉬운 원가절감 방법 및 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법규준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 교육은 기존의 물류·수출입통관·관세환급 및 FTA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과 차별화되며, 무역거래시의 실질적인 원가절감 방법과 간과하기 쉬운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인지도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환경 개선과 신뢰도 구축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교육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만족을 고객사께 선사할 것이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고객사의 가려운 곳을 시원히 긁어드릴 것입니다.

주최 신한관세법인
대상 전 고객사
신청 이메일 접수 : eajang@customsservice.co.kr
신한관세법인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참조
일시 2012년 5월 23일(수) ~ 24일(목)
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 2동 209-9 한국관세사회 6층 교육실
수강료 고객사 1일 100,000 원, 2일 150,000 원
비고객사 1일 150,000 원, 2일 250,000 원
문의 최지아 관세사
전화 : (대표) 02 - 3448- 1181
E-mail : jachoi@cusomsservice.co.kr

<일정 및 교육 내용>

1 일차	내용	발표자
10:00~11:40	물류비 절감을 통한 원가 절감	감동기관세사
13:00~14:40	관세환급을 통한 원가 절감	배중찬관세사
15:00~16:40	FTA를 통한 원가 절감	김영훈관세사

2 일차	내용	발표자
10:00~11:40	수출입과 법규준수	김병진관세사
13:00~14:40	외환과 법규준수	백승찬관세사
15:00~16:40	AEO와 법규준수	신성훈관세사

※ 자세한 내용은 신한관세법인 홈페이지 공지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터키 FTA’협정체결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터키는 유럽 인구 2 위(7,370 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post-BRICs 를 대표하는 국가군(NEXT-11, MIKT, BEM, VISTA)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국가신용등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터키와의 무역수지는 1957 년 양국 수교 이후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9 년 22 억불, 2010 년 32 억불, 2011 년 43 억불로 흑자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터키와의 FTA 협정은 지난 달 가서명 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터키 FTA 의 협상 경과, 향후 추진 계획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1.한-터키 FTA 의 협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1)협상경과

2010 년 3 월 한-터키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터키 FTA 의 협상이 출범 선언을 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총 4 차례의 공식협상 및 3 차례 소규모 협상이 개최되었다. 특히, 지난 3 월 26 일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터키 정상회담이 진행되었고, 이 때에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이 타결 선언 되었으며, 협정이 가서명 되기에 이르렀다.

2)향후 추진 계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터키 FTA 는 2012 년 상반기 중에 기본협정 및 상품 무역협정의 정식서명이 추진되고, 서명 이후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발효 시점 으로부터 1 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협정 타결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2.한-터키 FTA 의 주요 내용

한-터키 FTA 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를 추구함과 동시에 민감 품목(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보호 전략을 세우고 있다.

1)공산품 전 품목의 7 년 내 관세 철폐

양측 모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7 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주요 품목의 철폐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섬유: 수출 주력 품목(화섬 및 직물)에 대해서 5 년 관세철폐
- 자동차: 수출 주력 품목(소형차)에 대해서 7 년 비선형 관세철폐
- 자동차부품: 수출 관심 품목 5 년내 관세철폐
- 석유화학: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2)농수산물 분야에서 한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의 우리나라 측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전체 농수산물 에서의 비율 40.7%)하였다. 양허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감축, 장기관세철폐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 하였다.

3)원산지 자율 인증제 도입

한-터키 FTA 의 원산지증명방식은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한-EU FTA 와 마찬가지로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만, 6,000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이 가능한 한-EU FTA 와 달리, 한-터키 FTA 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요건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두고 있지 않음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터키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증수출자 요건을 득하여야 하는 수고는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터키 FTA 역시 원산지가 역내산인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의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터키는 지정학적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요르단, 모로코, 시리아, 튀니지 등 총 15 개국과 FTA 체결을 하였다. 따라서 한-터키 FTA 는 우리나라가 중동 및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데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혜지
(hjchoi@customsservice.co.kr)

¹ 한-터키 FTA 설명자료-외교통상부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⑩

가공무역기업의 법인기업 전환에 따른 수입설비 세금문제에 관한 공고 소개

중국의 해관총서는 지난 2 월 6 일자로 가공무역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수입설비 세금문제에 관한 공고를 공포했다. 공고내역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일정한 기간 내에 주어진 조건을 갖춘 가공무역업체들이 제공하는 무상설비 전체를 법인기업 설립에 투자하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기업이 무상 설비를 동일한 투자자가 기 설립한 법인기업에 이전하면 200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가공무역으로 기 등록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해관총서의 공고 내용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1 년 7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까지 법인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가공 무역 업체(독립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공조립공장, 이하 "가공공장"이라 약칭)가 외상(外商)이 제공하는 무상설비 전체를 법인기업 설립에 투자하거나 또는 2009 년 7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 기간 내 해당기업이 무상설비 전체를 동일한 투자자가 기 설립한 법인기업에 이전하면, 200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가공무역으로 기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9 년 6 월 30 일 이전에 수입신고하여 해관의 감관(監管)기간 내에 있는 무상설비는 관세와 증치세의 납부를 면제키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년 9 월 9 일부터 2009 년 6 월 30 일 사이에 가공공장 전체를 법인 기업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법인 기업 으로 이월되어 해관의 감관기간 내에 있는 무상 설비는 투자로 인정하고 관세와 증치세의 납부를 면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구체 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에서 언급한 세금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상투자법인 기업은 2012 년 12 월 31 일 이전까지 관련 무상설비 전체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해관(이하 "관할해관"이라 칭함)에 감면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관할해관을 통하여 심사동의 받은 후에는 《중화인민공 화국해관수출입화물감면 세 관리방법》(해관총서령제 179)의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해관에 감면세 수속을 밟기 위해 신청할 때에는 무상설비의 신고금액은 원 수입시의 신고 가격 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며, 외상 투자 법인 기업의 투자총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무상설비와 관련한 해관감관기한은 연속하여 계산한다.

3. 상술한 정책규정에 부합하는 무상설비의 감면 세는《감면세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심사 받고, 감관(監管)방식은 감면 설비 이월 (코드 0500), 징면(徵免)성질은 국비(國批) 감면 (코드 898),《중 화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징면세증명》(이하《징 면세증명》이라고 약칭) 주요 란에 출처를 "가공 조립공장 전환, 연번 DXXX 수첩으로부터 전환" 이라고 밝혀야 한다.

4. 상술한 외상투자법인기업이 해관에 무상 설비 감면세의 심사수속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외상(外商)이 제공하는 무상설비 전체가 법인 기업 설립에 투자되는 것과 관련하여 가공공장을 외상투자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는 관련 비준문서와 확정된 무상설비 명세서(원문)를 지방시급(市級) 상무부에 제공 하여야 한다. 투자 전체를 동일투자자가 기 설립한 법인기업에 산입 하는 때에는 심사비준한 가공 공장 가공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 그리고 확정된 무상설비 명세서(원문)를 지방시급(市級) 상무 주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외상투자법인기업의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와 《영업집조》사본(원본대조필)
- (3) 가공무역과 관련한 무상설비 수책과 원(原)



수입신고서 사본

(4) 기타 해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서류

5. 2011 년 7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가공공장은 외상이 제공한 무상 설비 전체를 신설법인기업의 설립에 투자하거나 또는 2009 년 7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가공공장 무상설비 전체를 동일한 투자자가 기 설립한 법인기업의 투자로 산입하는 때에는 외상투자법인기업과 가공 공장은 현행규정을 따라 수출입화물 신고서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신고서 "등록 번호"항 목에《징면세증명》번호와 가공무역수첩 번호를 기입하여 신고한다. 외상투자 법인 기업과 가공공장은 상술한 형식의 통관 신고 수속 후, 가공공장으로 하여금 무상설비 이월 수출화물 신고서를 근거하여 원(原) 무상 설비 수첩 등록세관에 무상 설비수첩 정산 (核銷)수속을 신청 하여 처리 하여야한다. 원(原) 무 상설비수첩등록 세관은 상술한 무상 설비 이월 수출화물신고서를 근거 하여 정산 수속을 진행한다.

본 공고 발표일 전에 상술한 가공공장이 무상설비 전체를 법인기업 신설에 투자 하였거나 또는 동일한 투자자가 기 설립한 법인 기업에 산입하였으나, 가공공장이 존속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상투자법인은 본 공고 제 6 조 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세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6. 2008 년 9 월 9 일부터 2009 년 6 월 30 일까지 가공공장 전체가 법인 기업으로

전환되어 법인기업으로 이월된 해관 관 기한내에 있는 무상설비에 대하여는 외상 투자법인기업이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신고서에 구분 하여 작성 하고, 신고서의 "등록번호"항목에는 《징면세 증명》번호, 외상투자법인기업과 가공 무역공장의 가공무역 수책번호를 구분하여 신고한다. 외상 투자법인기업은 상술한 형식의 통관 신고 수속을 밟은 후, 무상설비 이월 수출화물 신고서를 근거 하여 원 무상설비수책 등록번호 해관에 무상 설비 수책 정산 수속을 밟는다. 원 무상설비수책 등록세관은 상술한 무상설비 이월수출 화물신고서를 근거하여 정산수속을 진행한다.

7. 2009 년 7 월 1 일부터 본 공고의 공포일 전까지는 가공공장이 200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가공무역 수책 등록한 것과 2009 년 6 월 30 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무상설비의 일부를 동일 투자자가 기 설립법인기업에 이월한 것 그리고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미 이월된 무상설비 전체를 동일한 투자자가 기 설립한 법인기업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투자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세와 증치세의 납부는 면제한다. 그중, 가공공장이 기 설립한 법인기업에 이월하여 해관감관기한 내에 있는 무상설비는 본 공고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해관수속을 진행한다. 가공공장이 미 이월하여 해관감관기한 내에 있는 무상설비를 기 설립한 법인기업에 산입하려면 본 공고 제 5 조 규정에 따라 관련된 해관수속을 밟는다.

8. 2009 년 1 월 1 일 이후 신규 등록된 무상설비 또는 2008 년 12 월 31 일 이전에 등록하였으나 2009 년 7 월 1 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무상설비를

외상투자법인기업 설립에 출자하는 경우, 그리고 신생 외상투자법인기업의 업무항목이 국가 권장산업이거나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수 산업 이면 현행 정책규정에 따라 과세면제 이월 수속 을 밟을 수 있다(원수입시 이미 징수한 증치세는 이월시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관 세 청
심사정책국
사 무 관 임 창 한
(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납세심사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예고, 반송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1.개정이유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가격 안정 등

2.개정내용

- 별표 2

관세율표번호란의 0303 란 앞에 0203 란, 0203.1 란, 0203.19 란, 0203.2 란, 0203.29 란을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 한것만 해당한다), 0203.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등과 같이 신설.

- 별표 2

관세율표번호란의 1001 란 앞에 0904 란, 0904.2 란, 0904.21 란을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 및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 열매 등과 같이 신설.

3.시행시기

2012 년 4 월 1 일부터 시행, 별표 2 개정규정 적용시한은 2012 년 6 월 30 일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함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예고서

1.개정이유

보정제도 개선, 수입물품가격 하향 조정시 관세환급 근거마련 등

2.개정내용

- 보정(심사)제도 개정
- 세액보정은 부족 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해 신청 가능, 보정세액도 사후심사가 가능 (과납은 감액경정청구대상)
- 보정심사 확장
- 보정기간(6 개월) 경과건 및 타 세관 통관분에 대한 처리기준 명확화
- 수리후 6 개월경과
- [현행] 본부세관 기획심사부서
→ [개선] 통관지세관에서 수정안내 또는 경정처리
- 타세관 정보제공
- [현행] 타세관 정보제공절차 없음
→ [개선] 타세관에 정보제공하고 조치결과 회보 받음
- 감액경정청구와 과과납환급신청 절차 일원화 등
- 감액경정청구와 과과납환급신청 절차 일원화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가능('11.1 월부터 시행)

3.시행시기

2012 년 5 월 3 일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1.개정이유

- 수입원자재가 국내에서 북한 반송된 후 재반입 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제도 미비점을 보완
- 반송물품 보세운송절차 완화 및 통관보류물품 반송신고시 첨부서류 생략 등의 규제 완화

2.개정내용

- 대북 반송물품의 비과세 방지
- 북한반출 수입원자재는 반송규정 적용제외, 내국물품화 하여 반출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 통관보류물품 반송신고시 첨부서류 생략 등
- 통관보류물품 반송신고시 수입신고취하승인서



사본제출이 규정이나 내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첨부서류 제출 규정삭제

- 반송신고 기준 명확화
- 적재단위(B/L 또는 AWB)별 신고
- 반송물품 보세운송 절차 완화
- 활어, 냉장 또는 냉동화물 등 특수물품의 경우 일반업체 운송수단으로도 보세운송 가능
- 자유무역지역 반출물품, 여행자휴대품,
- 세판매장 판매물품 등에 대한 적용고시 명시

3.시행시기

2012 년 4 월 19 일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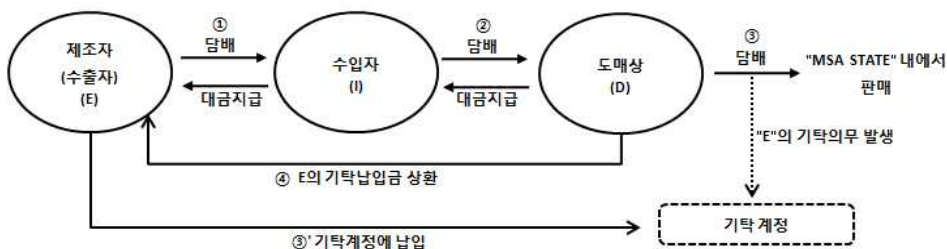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 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담배합의협약 기탁이행대금의 상환금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HQ W563503 2008.10.02)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Proceed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사후귀속이익)**은 우리 관세법 제 30 조 1 항의 5 호의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산요소 중의 하나이다.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사후귀속이익의 해당 여부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998 년 11 월 미국의 담배회사는 1950 년대 이후 46 개 주정부("MSA STATES")에서 가난한 흡연자들의 치료와 보건지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배상을 위해 "담배합의협약(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를 체결함.
- MSA 에 따라 담배회사는 일정 금액을 MSA STATES 에 지급하기로 함.
- MSA 의 이행을 위해 각 주는 "기탁의무 조항(Escrow Statute)"을 마련하여 46 개 주에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 1) MSA 에 참여하여 그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거나,
 - 2) MSA 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25 년간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기탁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관련 비용에 사용되도록 해야 함.
- MSA 에 참여하지 않는 담배회사는 "NPM, (Non-Participating Manufacturer)"이라 하며, 주로 해외의 담배 제조(수출)자가 이에 해당함.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근거 및 검토
 - (1) 관세법(19 U.S.C §1401a(b)(1))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함.
 - (2) 기탁의무 이행금의 상황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검토해야 함.
 - 가. 상환금액 지급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상환금액 지급이 사후귀속이익으로 실제지급가격의 가산요소인지 여부
2.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1) 관세법(19 U.S.C §1401a(b)(4)(A))에서 "실제지급 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라고 규정함.
 - (2) 쟁점의 상환금액 지급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비록 상환금액의 지급이 E 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었지만 상환금액의 지급은 I 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D 가 지급한 금액임.
 - (3) 또한, 쟁점의 상환금액 지급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법시행령(19 CFR)152.103(1)에서 "간접지급금액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또는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상환금액의 지급은 E 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이 아님. 또한 I 는 E 에게 상환대금 지급의무가 없음은 물론 상환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D 와 어떠한 관계도 없음.

3.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1) 관세법(19 U.S.C §1401a(b)(1)(E))에서 "수입 후의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금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수입물품의 전매가 발생하고 수익금이 직간접적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관련예규 : Ruling HRL 545035 (1995. 08. 23)]
 - (2) 본 사안의 상환금액 지급은 다음을 근거로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가. 기탁금액 상환의무는 D 에게 있으며, I 에게는 상환의무가 없음.
 - 나. 수입물품의 전매는 기탁금액 상환을 의도하고 있지 않음. 즉, 기탁금액 상환의 대상은 판매세 인자가 부착된 담배인 것에 반해 수입물품은 판매세 인자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임.
 - 다. 기탁의무는 수입을 한 뒤 수입행위와 관계없는 MSA STATES 에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발생하는 의무임.

□ 결정(Holding)

D 가 E 에게 지불한 기탁의무 이행대금에 대한 상환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대 규
dkchoi@customsservice.co.kr

□ 거래사실(Facts)

- ① 해외의 NPM(E)는 I 에게 담배를 판매하며, 거래가격에 기탁의무 이행비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 ② I 는 미국내 D 에게 담배를 재판매함.
- ③ D 는 MSA STATES 내에서 담배를 판매함. "기탁의무 조항"에 따라 D 가 MSA STATES 에서 담배를 판매한 해에 E 의 기탁의무가 발생하며, 그 다음해 4 월 15 일까지 할당된 기탁금을 납입하여야 함. (예: 담배수입(2004 년) → 도매상에게 담배 재판매(2005 년) → MSA STATES 에서 담배 판매(2006 년) → E 의 기탁 의무 발생(2007 년))
- ④ E 는 D 의 MSA STATES 내 담배판매로 발생한 기탁의무 이행비용을 D 에게 요구하며, D 는 E 에게 기탁의무 이행비용을 상환함.
- ⑤ E 와 I, D 는 모두 상호독립된 당사자임.
- ⑥ I 는 판매세인자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를 D 에게 판매하며, D 는 판매세인자가 부착된 담배를 판매한다. 기탁이행의무는 판매세 인자가 붙은 담배에 대해서만 발생함.

□ 쟁점(Issue)

1. D 가 E 에게 지불한 기탁의무 이행비용의 상황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1 만 시간의 법칙.



장승희
대표 관세사

Beatles 와 Bill Gates 간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Outlier」라는 책에 보면 1960년부터 약 10년을 세계최고의 Rock Band로 명성을 날렸던 비틀즈와 세계적 Software 그룹으로 20세기, 21세기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MICROSOFT의 창립자 빌 게이츠간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곧 1만시간의 법칙입니다.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고등학교 록 밴드에 불과할 때 함부르크의 클럽으로부터 초대를 받은 비틀즈는 매일 8시간씩 무대 위에서 공연하며 1만시간을 쌓아 나갔습니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교 시절 컴퓨터실에 살다시피 하며 Computer Programming을 익혔고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의 벤처기업을 도와주면서 1만시간의 경험을 쌓아 나갔습니다.

비틀즈나 빌게이츠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오랜 기간 앞서 나갈 수 있는 행운의 시작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1만시간을 집중하며 내공을 쌓은 덕분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에 이러한 1만시간의 법칙은 행운을 불러오는 필수 요건일 것입니다.

오랜 기간 관세사의 수출입신고대리는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주 업무였습니다. 1만시간이 아닌 2만 3만 시간을 이 업무를 수행한 관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세사의 역할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가 합법적, 안정적, 효율적이기 위하여는 다양한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하며 새로운 제도도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FTA 컨설팅, AEO 컨설팅, 환급 컨설팅, 심사자문 컨설팅 등등.. 고객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적용하여야 할 법령 및 제도들은 계속 생기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세장벽을 낮추어 주는 FTA 제도, 비관세장벽에 문을 만들어 주는 AEO 제도 등은 Globalized 된 무역환경에서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고객사들이 이러한 제도들의 혜택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한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만시간의 법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발전과 신한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관세및무역에대한
관세사의역할



임 보 화 관세사
(bhlim@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인천경기공항지사
- 28기 관세사시험 수석합격
- 수출입업무 및 통관

FTA News-
이제는 '한-터키 FTA'를
바라본다!



최혜지 관세사
(hi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



임창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선경 관세사
(j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US Rulings 연재
담배협약기탁이행대금의상환금
이과세가격에포함되는지여부



최대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원산지관리사 수석합격



SHINHAN Customs Service Inc.
www.customsservice.co.kr
www.ftagateway.co.kr

통관 44호 | 발행일 2012년 4월 15일 | 발행인 장승희 | 편집인 김연서
발행처 신한관세법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6-4
Tel 02-542-1181 Fax 02-544-9705 간별 월간